

[별표 8] <개정 2013.3.23>

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(제108조제1항 관련)

종류	감리원	자본금	장비
종합감리 전문회사	1. 수석감리사 5명 이상 [토목 또는 건축 분야 3명 이상(토목분야 1명 이상, 건축 분야 1명 이상)] 2.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20명 이상 (토목 또는 건축 분야 15명 이상)	5억원 이상	1. 삭제 <2011.12.13> 2.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 3. 철근탐지기 4. 삭제 <2011.12.13> 5. 소음측정기 6. 삭제 <2011.12.13> 7. 타일인발시험기
토목감리 전문회사	1. 수석감리사 3명 이상 [토목 또는 건축 분야 2명 이상(토목 분야 1명 이상)] 2.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12명 이상 (토목 또는 건축 분야 8명 이상)	1억5천만 원 이상	1. 삭제 <2011.12.13> 2.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 3. 철근탐지기 4. 삭제 <2011.12.13>
건축감리 전문회사	1. 수석감리사 3명 이상 [토목 또는 건축 분야 2명 이상(건축분야 1명 이 상)] 2.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12명 이상 (토목 또는 건축 분야 8명 이상)	1억5천만 원 이상	종합감리전문회사와 같은 장비를 갖출 것
설비감리 전문회사	1. 수석감리사 2명 이상(기계 분야 또 는 건축기계설비 분야 1명 이상) 2.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8명 이상(토 목, 건축 또는 기계 분야 5명 이상)	1억원 이상	1. 풍압풍속계 2. 초음파유량계 3. 회전속도계 4. 삭제 <2011.12.13> 5. 소음측정기

비 고

1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, 「기술사법」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,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, 「전력기술관리법」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자 또는 「소방시설공사법」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가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·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.
2. 등록기준 중 장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